

(붙임1)

「한국은행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주요 개정내용

1. 개정 필요성

- 특별지원부문 지원기간이 2019.8.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
- 지원대상 업종 명확화, 간소화로 금융기관 직원들의 실무 편의를 제고할 필요
 - 전략지원부문의 지원대상 업종을 명확히 하고 일부 중복업종을 단순화
 - 일반지원부문 중 지원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영기준을 단순화

2. 주요 개정내용

- 특별지원부문

- 지원기간 연장, 지원비율 및 한도 상향

| 구 분 | 개정 전 | 개정 후 | 비 고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지원기간 | '17.9.1~'19.8.31 | '19.9.1~'21.8.31 | 2년 연장 |
| 지원비율 | 25% | 50% | 상향 조정 |
| 지원금액 | 5억원 | 10억원 | |

- 전략지원부문(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)과 중복되는 「선박 및 보트 건조업」을 특별지원부문 지원대상에서 제외

□ 전략지원부문

-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대상 기업을 명확히 함

| 구 분 | 개정 전 | 개정 후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지역특화산업 | 영동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업체 | 영동지역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고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|
| 지역전략산업 | 영동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강원도 전략산업 영위업체 | 영동지역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고, 「강원도종합계획」(강원도 공고 제2012-209호, 2012.3.8)에 의해 선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|

- 지역특화산업·지역전략산업의 세부 업종에 표준산업분류코드 병기
- 「농림수산업 관련기업」을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내 「농축수산물 및 관련 식료품·음료 제조업체」로 일원화
- 지원실적이 없는 「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강원도 향토음식 판매 업체」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- 기타 세부업종 명확화 및 자구수정 등

□ 일반지원부문

- 지원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5개 업종(연구개발우수기업, 추천기업, 수출관련기업, 교육관련기업, 기타 지원기업)을 지원대상에서 제외 하여 운영기준을 단순화

3. 시행일

□ 2019. 9. 1일(2019.11월 한도 배정 분부터 반영)

- 단, 개정 기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지원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지원종료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름